

건설공제조합의 리스크 특징과 리스크 지배구조

손재익 | 건설공제조합 리스크관리팀 과장

건설공제조합의 지배구조

기업 지배구조란 이사회, 경영진, 주주, 기타 이해 관계자간 관계들의 집합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말한다. 금융기관의 경우 공공성과 이에 따른 투명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으로 파악한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 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건설산업기본법」 54조)되었으며, 조합원의 신용 상태 평가 후 보증 또는 융자 등을 실시(「건설법」 61조)한다. 「건설법」의 설립 목적과 주요 사업에 따르

면, 건설공제조합은 십시일반·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서로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공제조합의 성격과 신용 차별화를 통하여 보증과 융자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운영위원회 및 총회를 통해 고객이자 주주인 조합원에 의하여 모든 주요 정책이 결정되는 조합적 특성과 리스크 차별화에 따른 영업 절차 수립 및 객관적·전문적 의사결정 체계를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리스크 특징과 리스크 관리

건설공제조합은 국가 건설업 전담 보증기관으로서 공공성이 강하며, 보증·융자의 대상이 되는 조합원이 고객이자 주주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리스크의 특징이 결정된다. 보증·융자 사업에 있어서 조합의 근본적인 리스크는 조합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며, 리스크 통제 구조의 측면에서는 고객인 조합원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 위원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와 배치되는 정책 결정이 가능하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는 조합에서 '리스크 관리'란 보증 인수로 인한 리스크 양을 측정하고 리스크 양에 상응하는 충분한 자본금을 보유토록 하여 계속 기업을 영위토록 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측정된 리스크 양을 신용평가 모형, 보증수수료, 보증 한도 등에 적절히 반영·통제토록 하는 업무 절차를 포괄하는 의미이다. 따라서, 리스크 양을 결정하고 리스크 관련 정책(목표 자

기자본 설정 및 자본 정책 수립, 신용 평가, 한도, 수수료 등) 결정시 객관적·전문적 의사결정이 가능토록 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다. IMF 위기 이전의 경우 조합원들의 신용도 차이가 중요하지 않았고 건설 수주가 기업의 성장을 의미하던 개발 시대로 리스크 차별화에 기반한 리스크 관리 기능-객관적 신용평가에 의한 신용도 차별화, 리스크 기반 수수료·자본 정책의 결정 등-없이도 보증·융자 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건설업 면허 개방과 보증 규모의 급속한 증대, 건설산업 환경의 악화로 인한 부도 기업 증가 등으로 조합의 리스크 관리 기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조합의 보증 잔액이 100조원이 넘어서면서 리스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리스크에 대비하는 자본은 5조원에서 정체하면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지배구조는 기업의 리스크 인수(risk taking) 관련 전략 수립 및 그에 대한 감시·관리를 위한 절차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과도한 위험을 추

구하기 쉬운 금융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리스크 지배구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리스크 관리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무적인 설치 및 전문위원 참여를 통한 객관성·전문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건설공제조합의 리스크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자는 논의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제기되다가 2009년에 공론화되었으며¹⁾, 2009년 3월 개정 입법되어 감독 기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실무적인 논의를 통하여 감독 기준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시로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감독 기준의 주요 내용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상 및 역할이 규정되었다. 조합의 주요 정책이 운영위원회와 총회 의결을 중심으로 결정되고 2012년까지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이사회 하부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리스크 중심의 의사결정 사항이 조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촉으로 임명된 외부 리스크 전문가 3인과 내부 임원 3인으로 구성되고 리스

크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토록 함으로써 리스크 중심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계를 구축하였다.

맺음말

건설공제조합이 건설업 경기의 지속적인 하락 및 변동성 증가, 보증시장 개방 등 2000년 이후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건설업 전담 금융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리스크 지배구조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건설 관련 감독 기준²⁾의 시행과 감독 기준에 따른 리스크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실질적인 조합 리스크 관리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향후 목표 자기자본 설정, 자본 정책 등 리스크 관리의 기본 정책 수립과 신용 평가·한도·수수료 등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결정 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감독 기준 및 정관에 규정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건설공제조합이 건설업 전문 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CERIK

1) 민간 중심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부로 공제조합 감독 기준을 마련하여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2) 국토교통부의 '건설 관련 공제조합 감독 기준' 제정의 주요 내용과 조합에 미치는 영향은 2011년 12월호 「CERIK저널」 참조.